

제335회 임시회  
2014. 10. 24.(금)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10. 24.(금)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엄재창 의원 외 6명

나. 제출일자 : 2014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10월 7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10월 15일

-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엄재창 의원)

가.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규정 마련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축위원의 임명 및 위촉 관련 세부 규정, 중복 위원 배제 및 청렴서약서 제출 조항 신설 : 안제4조

○ 건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안제5조

- 건축위원의 해임·해촉 규정 신설 : 안제6조
- 건축위원 연임 제한 근거 규정 마련 : 안제9조
- 건축위원회 회의 및 심의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안제11조, 안제12조
-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 : 안제14조

###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금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규정 마련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제4조에서는 건축위원의 임명 및 위촉관련에 대한 세부사항과 중복위원 배제 및 청렴서약서 제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5조와 안제6조에서는 건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건축위원의 해임·위촉 조항을 신설하고, 안제9조에서는 건축위원의 연임제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음. 안제11조와 안제12조에서는 건축위원회 회의 및 심의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에서는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규정을 신설하였음.
- 금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규정 마련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엄재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
----------	----

발의연월일 : 2014년 10월 2일

발 의 자 : 엄재창, 임희무, 김영주  
연철흙, 윤은희, 최광옥  
윤홍창

## 1. 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규정 마련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건축위원의 임명 및 위촉 관련 세부 규정, 중복 위원 배제 및 청렴서약서 제출 조항 신설 : 안제4조
- 나. 건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안제5조
- 다. 건축위원의 해임·해촉 규정 신설 : 안제6조
- 라. 건축위원 연임 제한 근거 규정 마련 : 안제9조
- 마. 건축위원회 회의 및 심의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안제11조, 안제12조
- 바.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 : 안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5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3.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며, 5개 이상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또는 영에 따라 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개정 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건축에 관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축문화과장, 서기는 건축문화과 소속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충북경제자유구역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하는 때의 간사 및 서기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

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여할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하며, 심의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2조(심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③ 제7조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 일부터 30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동일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반복 개최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한다.

⑤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를 신청한 자는 위원회에 간략설계도(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 ⑤ 소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 놓아야 한다.

제15조(사전기술 검토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회 개최 시 그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 ③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사 등을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서기,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9조(설치) 법 제88조 및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은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상호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상호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상호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도 소속직원으로써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
4.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2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

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임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4조(간사 및 서기) ①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도 건축문화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제25조(조정신청 및 회의)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③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의 경우 위원장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회의록)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비용부담)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 관련공무원의 출석,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당사자의 자신의 주장이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③ 전문위원회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하여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한 때 및 법 제93조에 따라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과 여비) 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서기,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관련서식)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거부 및 중지통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 내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장 보칙

제32조(건축상) ① 도지사는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입선으로 구분하며,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③ 건축상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포함한다)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7조에 따라 별표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선출 및 선임된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 발췌

## □ 건축법

-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할 수 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 2) 종교시설
- 3) 판매시설
-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 및 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할 것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의 결과를 알릴 것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아.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